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3나4127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7 선고 2023나412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50565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용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이철의

변론 종결2024. 7. 3.

판결 선고2024. 8. 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505651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강조한 주장과 추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을 "을 제1 내지 10호증"으로 변경하고, 4쪽 6, 7행의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500) 소송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14.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지급명령 전부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500).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24. 6. 13. 기각되어(대법원 2024다229978),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재남

판사선의종

판사정덕수